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2020. 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2020. 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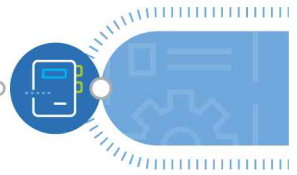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개요

I 용어의 정의	4
II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6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란?	7
[참고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9
III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10
IV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12
V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15
VI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19
[참고 3]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연계	22
VII 통합관리제 관리·감독	23
VIII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취소	26
IX 기타 관리	28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규정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개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국가R&D로 도입한 연구장비를 과제 종료 이후에도 유지·보수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보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 ◎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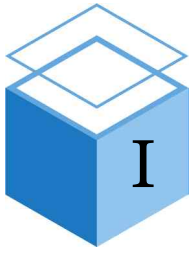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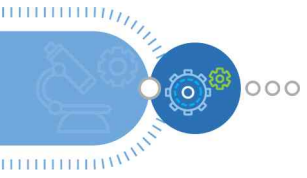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무엇인가요?

- ◎ 연구 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 또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 단위별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하여 적립,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기정통부(NFEC)에서 별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 여러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가 한 계정으로 통합(개인/묶음 단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 면제
- 과제 종료 후, 수리 시 활용



용어의 정의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 (적립 대상)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 중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비용
 - (사용 대상) R&D 재원('Ⅲ.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참고)으로 구축되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통합관리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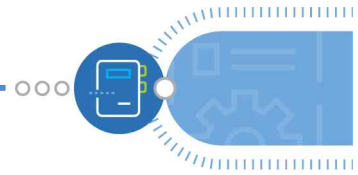
- ◎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사용하도록 연구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

▣ 통합관리 단위

- ◎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기관 단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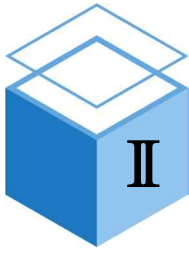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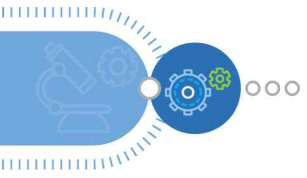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 ◎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



■ 기타 필요한 용어

용어	상세설명	참고규정 (공동관리규정)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에게 협약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행위	제12조
사용/집행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실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거나, 연구기관의 지원부서가 사용처에 대금을 납부하는 행위	제12조의2
적립(통합관리)	연구기관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하는 행위	-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 참여 조건

-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제도 운영 가능

※ 단,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①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②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 각 통합관리 계정은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립 및 사용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여야 함

- ③ 비영리연구기관 중 다음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

-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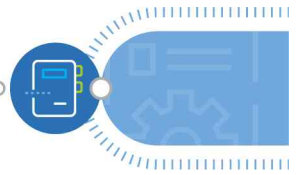
* (공동관리규정 제14조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

-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동시에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고, 최근 2년 간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내역이 없으며, 기관 내부 연구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

■ 신청절차

- ◎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관련 서류 및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②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
- ③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자료
- ◎ 비영리연구기관 중 '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①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 ②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위 조항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결산, 경영실적, 감독 등의 검토 권한을 기획재정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신청기관이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으로 지정함
 -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 및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은 지정일로부터 가능함
 - ※ 신청 후 지정 완료까지 기한은 약 3개월 소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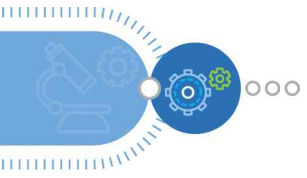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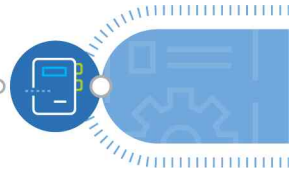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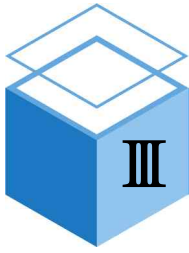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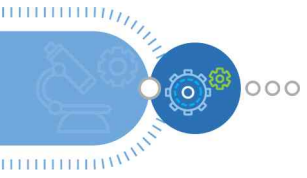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Q 통합관리기관이 되면 반드시 통합관리 해야하나요?

- ▶ 모든 연구책임자가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연구책임자만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책임자가 통합관리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단,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됩니다.
(상세설명은 ‘Ⅲ.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참고)



참고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정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사용·잔액 현황 관리가능 최근 5년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 가능
	나. 통합관리계정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관리단위(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별 계정설정 연구과제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및 사용 현황 관리가능
	다.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 (연구기관 단위: 10억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7억원, 연구책임자 단위: 3억원) 과기정통부 승인 시 증액 가능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 → 담당지원부서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승인 및 집행)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내역 확인 가능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대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재원의 ZEUS 장비 관리 기능 및 계정 연계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정별 사용 내역 (유지·보수 대상 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확인 가능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여부 (담당지원 부서 담당자와 연구책임자 확인 가능)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상시 점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점검·관리 기능 예) 용도외 사용 방지, 타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 정부수탁사업

- ◎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한 연구시설·장비의 성능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등을 통합관리 가능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시설·장비비 제2호 용도에 해당)
- ※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되는 연구시설·장비비 등 통합관리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연구시설·장비 작동(활용)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연료비 등은 제외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 ▶ 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단절을 대비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분석료 수입 등을 통하여 향후 자체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지원한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통합관리할 수 없습니다.
- 각 소관부처에서 판단하여 협약 시 통합관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연구기관 기본사업(기관고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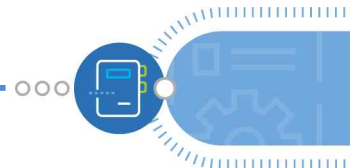
-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사업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를 통합관리 가능함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도 통합관리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는 예산의 목적이 시설·장비 구축이므로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상 및 통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표 1〉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비 세목·용도별 통합관리 적용 구분

사업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장비 관련)	적용 구분	
정부 수탁 사업	직 접 비	연구시설 · 장비비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1-1. 구입·설치비(부대비용 포함) 1-2. 성능 향상비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불가
			해당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2-1. 임차사용료 2-2. 유지·보수비 2-3. 연구장비 이전·설치비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가능
			3. 연구장비 개발 경비	개발 목적	통합관리 불가
			4.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부지, 시설, 장비 구축비 등)	인프라확충	통합관리 불가
	연구활동비	2. 공공 요금			통합관리 불가
		4. 시험분석료			통합관리 불가

〈표 2〉 연구기관 기본사업 세목별 통합관리 적용 구분

사업	목	세목	적용 구분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4)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불가
		연구개발활동비 (360-05)	과제에 활용	통합관리 가능

* 연구개발 출연금(360목) : 정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 연구기관 내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표 1〉의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비를 준용함

IV

통합관리계정의 개설 · 운영

■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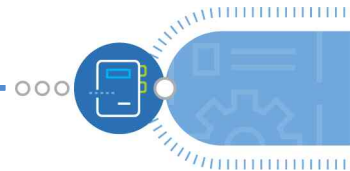
- ◎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기관 단위의 계정설정이 가능하며, 통합관리 단위는 상호 중복 운영이 가능
 -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규모에 따라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
 -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통해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을 설정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관리 및 사용함
- ※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 단위로만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구기관/공동활용 시설/연구책임자 단위의 계정을 모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 적립되는 통합관리 단위의 적절성 여부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그림 2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단위

TIP >>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관리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공동활용시설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묶음 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 개인단위로는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공동활용시설의 수익금 등의 기타 기관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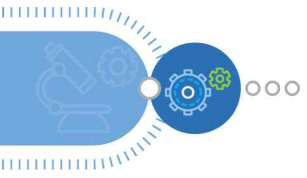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 ◎ 연구책임자의 시설·장비 운영 여건에 따라 통합관리 단위를 결정하고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은 단위별 적립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공동활용시설, 연구기관의 규모·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 필요
- ※ (필요 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유지·보수비 등 사용내역

〈표 3〉 통합관리단위별 적립(통합관리)한도

통합관리 단위	상세 내용 (운영사례)	적립한도 (1계정 당)
연구책임자	연구 몰입 등을 위해 연구자별 단독 활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대학의 학과, 연구기관의 부서/센터, 특성화된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등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집적화와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경우	7억 원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단위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소규모 기관이거나 연구책임자·공동활용시설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이 중단*된 경우 * 연구책임자의 연구중단(사망, 이직 등) 또는 공동활용시설의 폐쇄 등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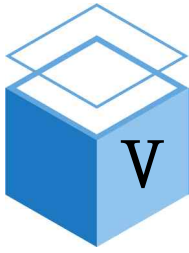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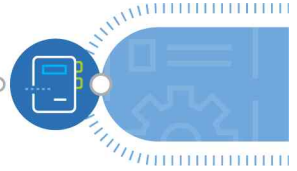
▶▶▶ **[참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와 적립한도** ◀◀◀

- ▶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는 취득가액의 10~26%(10년 가정)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일반) KBSI(2015), 노후 연구장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대형) OECD GSF(2010),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
- ▶ '15~'17년, 가장 많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한 9대 연구기관(출연연 3개, 대학 3개, 특정연 3개 /ZEUS 등록기준)의 3개년도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분석한 결과, 1인의 연구자가 연간 평균 약 3점, 구축총액 평균 약 3억 원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일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가액은 10억 원 이하가 90.3%로 나타났습니다.
 - 대형연구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단을 별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연구시설·장비 구축비가 약 50~7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 ZEUS의 연구시설·장비 정보와 유지·보수비 소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의 10~26% 수준에서 적립한도를 설정하여 안정적인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 ◎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 운영규정 마련 또는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필요 시,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고려한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연구책임자/공동활용시설/연구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분할 적립 등) 조정 가능
- ※ 단, 분할적립 시 관리·점검을 위한 적립·사용내역 증빙 관리 철저 필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 ◎ 연구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관리(계상·지급) 가능

* (공동관리규정 별표 2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 제2호

**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됨



[근거규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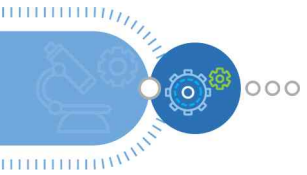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표 4〉 공동관리규정 별표 2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시설·장비비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연구 시설· 장비 비	1. (전략)...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후략)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3. (전략)...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후략)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기본사업에 참여 시, 통합관리 여부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여부를 결정함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를 통합관리비로 계상 하고,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확정

- 전문기관은 연구과제계획에 제시된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 적정성 여부를*를 확인 후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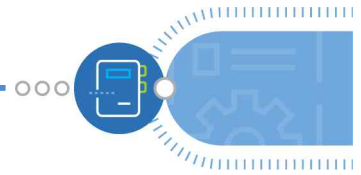
* 통합관리 적용 여부(기관/사업) 및 지급한도

〈표 5〉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세목 및 계상액 산정을 위한 직접비 여부

비목	세목		산정 대상 직접비 여부	합계	
직 접 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	
			지급	현금	○
		현물		×	
		외부 인건비	미지급	×	
	지급		현금	○	
				현물	×
		학생인건비		○	
		소계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일반	○
	통합관리			○	
			현물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소계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소계		-		
	간접비		-		
	연구비 총액		-		

※ [공동관리규칙 서식 2의2] 연구개발계획서 참고

※ (음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대상 직접비 해당 세목



- ‘(기준이 되는) 직접비’ 및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직접비의 10%)’는 최초 협약 시점에 산정하며, 협약 변경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음

※ 최초 협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협약서를 따름

[예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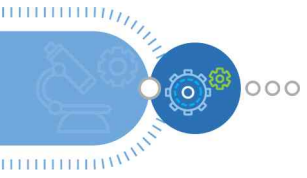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구분		최초협약	변경	비고
협약일		2020.1.1.	2020.3.1.	
총 연구비		40,000만원	40,000만원	
직접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등	10,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감액
	그 외 직접비	25,000만원	30,000만원	5,000만원 증액
간접비		5,000만원	5,000만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2,5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	변동 불가

※ 상기 예시의 2,500만원은 ‘지급 한도’이므로 그 이하 지급은 무방함

Q 위탁연구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불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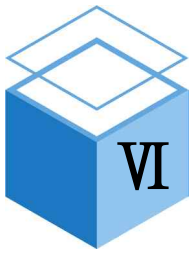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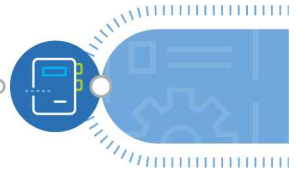
▶ 아닙니다. 위탁연구개발비로 연구를 수행하는 통합관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전체 연구개발비로 간주하여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은 소속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합니다.
- 즉, 위탁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내 미지급인건비, 현물 등을 제외한 직접비 중 10% 이내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여 적립가능합니다.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 ◎ 통합관리기관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신청(연구책임자)-확인(담당 지원부서) 절차를 거쳐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 직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적립하되, 계정별 적립한도(IV. 통합관리 계정의 개설·운영 참고)를 준수하여야 함
 - * 통합관리 계정으로의 과도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통합 단위별 적립한도액을 차등 설정
 -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함
 -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적립
 -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타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 추가 적립 가능
- ◎ 전문기관은 과제 정산 시, 통합관리기관으로 지급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 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
 - ※ 통합관리기관으로 지급된 금액의 적정성은 확인하되, 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 후 사용된 내역 정산은 면제



VI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용도

-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어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상기 조건을 만족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가액과는 무관)
-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상의 등록기한이 지났더라도 추가 등록은 가능하나, 연구기관의 ‘등록일 평균’ 실적에 반영됨을 유의

〈표 6〉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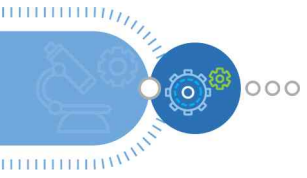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재원		ZEUS 등록여부		비고
		ZEUS 등록	ZEUS 미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		○	×	• 제도 시행전 구축된 시설·장비* 사용가능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활동비	○	×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	×	
정부지원 비R&D 구축장비		×	×	-
기관자체 구축장비 (교비 등)		×	×	-



[대상 시설·장비 정보] ZEUS 정보 연계



- ▶ ZEUS는 ZEUS와 기관 내 시스템을 연동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정보를 통합관리기관의 자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3]
- ▶ ZEUS와 정보연계가 된 통합관리기관은 집행 프로세스에서 손쉽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사용 가능 장비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연계시, 기관의 자체 시스템에서 ZEUS 등록된 R&D 재원의 연구시설·장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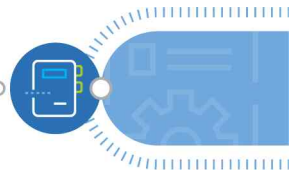
-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비를 사용함
 - (유지·보수) 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warranty) 등을 포함
 - * (점검/수리)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내 ‘별표 6 운영유지비’의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는 비용

〈표 7〉 표준지침 내 유지·보수비의 정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지 보수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운영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 (임차·사용)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임차·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가능함
 - ※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 (이전·설치)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경우 이전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각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소요경비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를 거쳐 사용함
 -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재원에 관계없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해야 함



Q 사용(집행)시기나 사용(집행)를 제한은 없나요?

-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수행 중에도 수리, 이전 등 필요요소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적절한 유지·보수비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유지·보수비는 과제 종료 후까지 지속사용이 가능하므로 남겨두었다가 수리, 이전 등 소요가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집행)률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사용(집행)률은 부당행위 등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적립 및 지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정의 통합관리 단위별 적립 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거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⑤)
- ▶ 연구기관에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 개별 연구과제의 연구비 사용 실적 제출 시, 해당 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관리의 적정성은 ‘Ⅶ. 통합관리제 관리·감독’에 따라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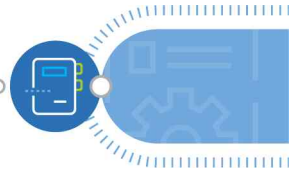
참고 3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연계

- ◎ (목적) 정보연계를 통해 ZEUS에 등록된 국가R&D 재원의 장비를 기관 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시점에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용도의 사용”을 미연에 방지
- ◎ (대상) 통합관리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ZEUS를 연계하여 장비관리기능 구현을 희망하는 기관(‘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2조에 근거)
 - 사업과제 기반·연구장비 기반의 연구시설·장비의 등록/수정/삭제 API 등 등록된 장비정보 관리기능 제공

〈표 8〉 정보연계 진행 절차

단계	정보연계 진행 절차	정보연계 준비 과정 및 관련자료
1	정보연계 사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연계 신청 전 ZEUS-신청기관 간 관련자료 검토 및 사전협의 진행(정보연계 가이드라인 확인)
2	정보연계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연계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 API 연계기능 제공
3	정보연계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의 API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US 포털 내 소속기관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정보연계 신청 진행 (기관관리자/장비담당자 권한신청) - 신규가입의 경우, 3가지 항목(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을 ZEUS에서 보유중인 기관정보DB와 비교 후 신규등록 진행 - 시스템 입력 시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명칭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함(특수문자 제거 후 입력)
4	정보연계 신청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US의 기관별 승인 후 정보연계 고유 API KEY 발급 연계기관 내부시스템과 ZEUS API 연계를 위해 고유 API KEY 사용
5	정보연계 모듈 자체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 내부시스템의 연계모듈 자체 개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된 연계기관 시스템과 ZEUS API 정보항목 코드 연계
6	정보연계 수정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서비스 전 내부시스템과 ZEUS API 연계 오류 점검 및 테스트 (정보연계 최종 승인)
7	정식 서비스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연계 서비스 시작

- ZEUS API 연계주소 : <https://api.zeus.go.kr> (해당도메인 외 사용불가)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보팀 (T. 042-865-3483)



통합관리제 관리 · 감독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와 점검

- ◎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기관 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하여야 함

* R&D 재원으로 구축하고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다음의 자료 제출을 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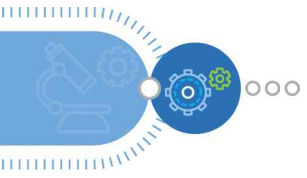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 ①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및 관리 실적
-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통합관리·사용 내역
- ③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출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점검은 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원칙

[운영현황점검] 관리실적의 보고

- ▶ 통합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통합관리·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통합관리 모니터링시스템(ZEUS)에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 (자체점검표) 붙임의 관리지침 전문 중 별지 [서식 2]
 - ** 관련 증빙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
- ▶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별지 [서식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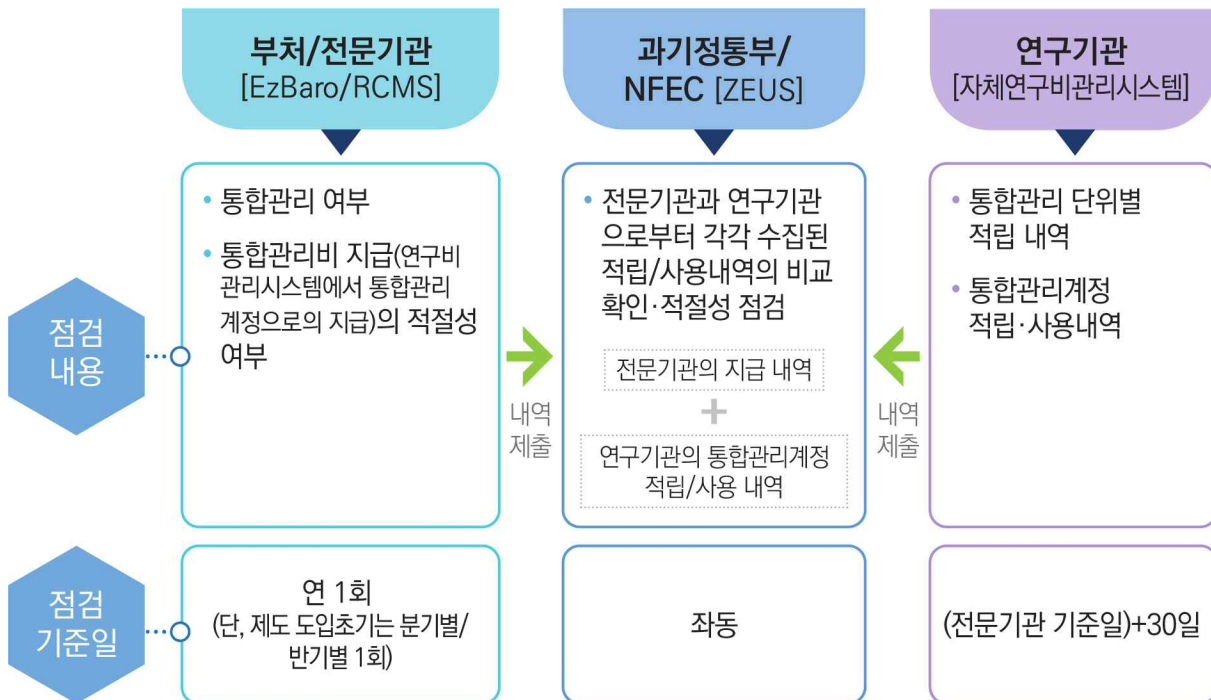


〈표 9〉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통합관리·사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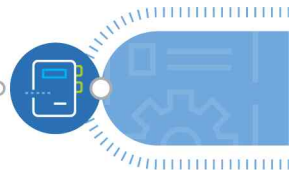
구분	필요 필드값
통합관리내역 (수입)	통합관리계정단위, 통합관리 계정번호, 연구기관명, 연구기관사업자번호, 전문기관명, PMS 과제번호, 연구책임자정보(과학기술인등록번호, ZEUS 아이디), 비목, 세목, 통합관리 유무, 적립일자, 적립금액
사용내역 (지출)	계정책임자정보(과학기술인등록번호, ZEUS 아이디), ZEUS 장비 등록번호, 비목, 세목, 사용용도(임차·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전·설치비), 거래일자, 금액, 거래처명, 거래처 사업자번호
사용비율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총액, 통합관리 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비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에게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모니터링 개요



※ (점검기준일)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함



‘개선 필요사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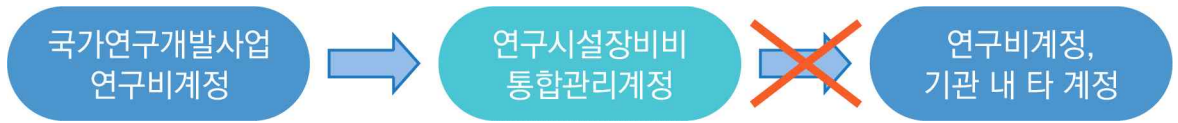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정해진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적립대상이 아닌 연구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사용한 경우 등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개선 필요사항’에 해당되므로 통합관리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용도 외 사용 : 운영현황 점검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관리지침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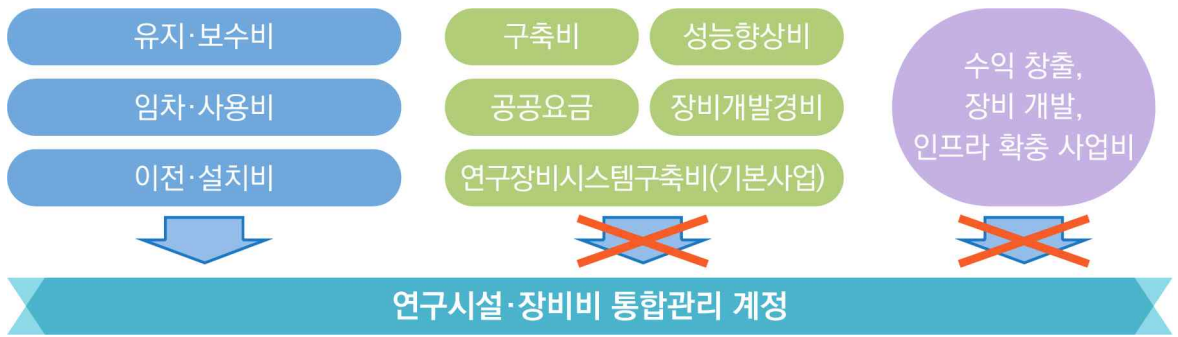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3년을 초과한 동일 시설·장비의 임차·사용료는 허용되지 않음(관리지침 제9조제2항 제2호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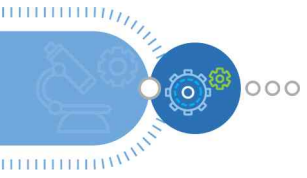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 ② 부당회수 :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관리계정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타당한 이유 없이 통합관리기관 내 타 계정으로 회수한 경우



- ③ 적립한도 초과 : 점검대상기간 중 관리지침 제7조제1항의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 ③ 부당 적립 :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상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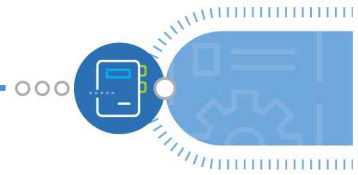


■ 개선요청과 이행결과 보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점검 결과로 개선필요사항 또는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② 자체점검결과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 개선요청을 받은 통합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지정취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선요청 후에도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이행 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지정취소 조치를 받은 연구기관은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잔액을 반납함
 -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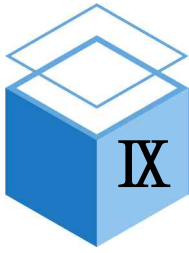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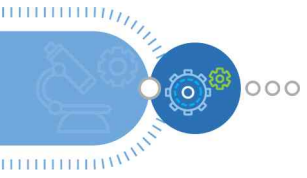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예시 지정취소 시 사용잔액의 반납

- 지정취소일 : 2021.1.1.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지정취소일 현재) : 3,500만원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반납금액 : 2,500만원
 ∴ 3,500만원-1,000만원(현재 수행 중인 A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
- 반납대상과제 처리순서

과제 구분	소관 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금액	반납금액	반납기관	비고
A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2020.7.1.~ 2012.6.30	1,000만원	-	-	수행 중인 과제는 미반납
B	산업부 (산업기술평가 관리원)	2020.1.1.~ 2020.12.31.	1,000만원	1,000만원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C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2019.7.1.~ 2020.6.30.	500만원	500만원	정보통신 기술진흥 센터	
D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2019.4.1.~ 2020.3.31.	2,000만원	1,000만원	보건산업 진흥원	잔액 범위내만 반납
E	국토부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18.1.1.~ 2018.12.31.	2,000만원	-	-	

- 반납순서
 - A과제는 현재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로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지정취소일로부터 종료일이 가장 가까운 B의 과제에 1,000만원 반납 (추가 반납필요액 : 1,500만원)
 - 지정취소일로부터 종료일이 2번째 가까운 C의 과제에 500만원 반납 (추가 반납필요액 : 1,000만원)
 - 지정취소일로부터 종료일이 3번째 가까운 D의 과제에서 나머지 1,000만원만 반납 (추가 반납필요액 : 0원)
 - E과제는 더 이상 반납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반납처리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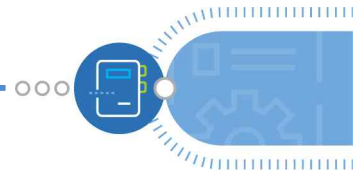
IX 기타 관리



▣ 통합관리 계정의 이관·불용

- ◎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되고 해당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사용함
 -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은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음
 - ① 연구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가능
 - ②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직하는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②, ③) 해당 계정의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단위 또는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
- ◎ 공동활용시설의 운영이 종료되어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
- ◎ 지정의 포기 등 연구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반납 절차 및 금액 산정은 지정취소 시와 동일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또는 중단

-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반납하여야 함
 - 통합관리계정의 잔액 한도 내에서 총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반납
- ※ 통합관리단위별 분할적립의 경우, 적립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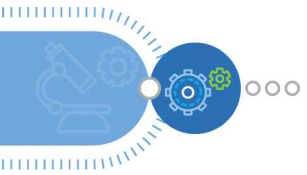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예시

과제 중단 시 반납

- 협약 해약일 : 2020.6.1. (과제기간: 2020.1.1.~2020.12.31.)
- 해당 과제의 연구장비비 계상액 : 3,000만원
- 반납액 : 1,500만원
단,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이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반납

▣ 통합관리 계정의 이자

- ◎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 남겨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표 10〉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절차 개요도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EC	소관 부처/ 전문기관
지정	① ZEUS 내 지정신청 - 연 1회 (제도 도입초기는 분기별 1회) ④ 통합관리제 기관 지정	② 자격심사 ③ 지정여부 통보	⑤ 통합관리기관 파악
과제계획서 작성 및 협약	① (신규) 과제계획서 작성 (기존) 협약 변경 신청 - 연구시설·장비비 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④ 통합계정설정/관리		② 과제계획서 검토 - 통합관리기관 여부/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 적정성 검토 - 직접비 10% 이내 ③ 협약 체결 또는 변경
지급 및 적립	② 연구책임자가 기관 담당 부서에 통합관리계정 적립 신청 ③ 기관내 계정별 통합연구시설·장비비(별도 자원 포함) 적립 - 계정별 적립잔액 한도 검토		①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기관에 지급
사용	① 연구책임자가 기관 담당 부서에 관련 증빙 후 유지보수비 등 사용신청 ② 기관 담당부서 증빙 검토 후 비용 지급		
모니터링	① 기관 자체 정산/관리 후 사용(집행)내역 ZEUS 업로드 - 점검일은 “전문기관 기준일+30일” (기관 내 이체시간 고려)	② ZEUS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비 지급내역(전문기관)과 사용(집행)내역(연구기관) 교차점검	① 지급내역은 EzBaro/RCMS를 통해 ZEUS와 공유 - 연 1회 (제도 도입초기에는 분기별/ 반기별 1회)
후속조치	③ 과제비→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지급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 조치에 따름(기존과 동일) ④ 통합관리계정 내 사용(집행) 문제 발생 시 개선요구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에 따른 잔액 반납	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 요청 또는 지정취소	① 과제 정산 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의 적정성 확인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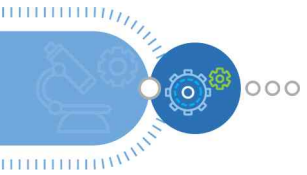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 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 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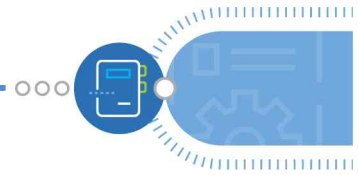


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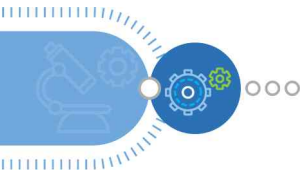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3. 연구개발성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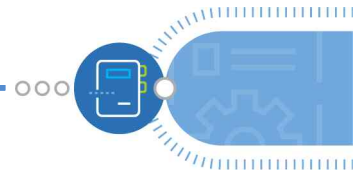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로 구축되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 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는 유지·보수비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및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사용하도록 연구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기관 단위로 구분된다.



5.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계상·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6.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과 이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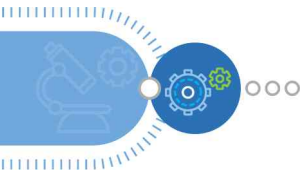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제2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3. 별표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가진 기관

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2.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
3.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ZEUS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
3.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 시스템 증빙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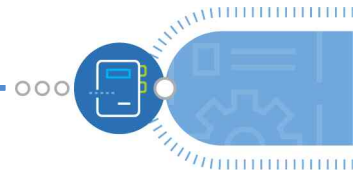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관의 업무)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업무
2.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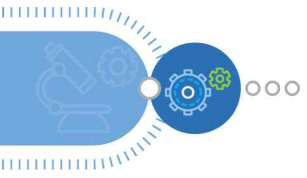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제8조(계정설정 단위)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통합관리기관은 제7조의 운영 규정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 및 한도는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기관 단위는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10%이내에서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2.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활용을 위해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과 지급)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 시설·장비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기존의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설치

④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 관리 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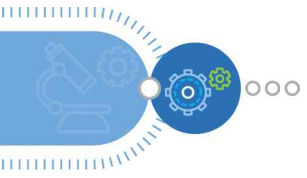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11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 연구회가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현황 점검)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자체 운영현황 점검 결과 다음의 각 호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점검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11조제3항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변경하였거나, 통합관리기관 내 타 계정으로 회수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제9조제1항의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상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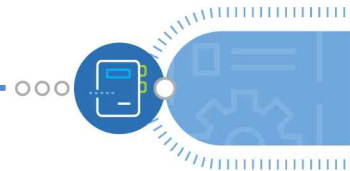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및 관리 실적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지출내역
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로 제13조제1항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확인되는 경우 통합 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1항의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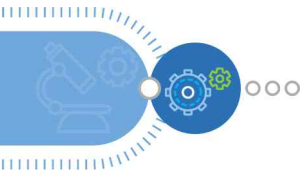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개선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 요청 후에도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제15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합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1조제3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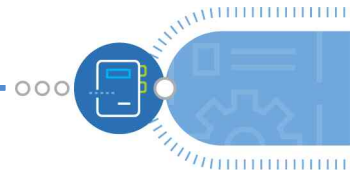
③ 지정의 포기, 연구시설이 폐쇄되거나 연구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이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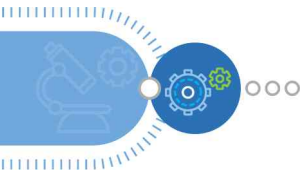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9.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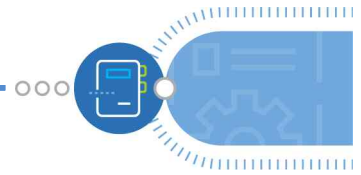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 · 장비비 계정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사용·잔액 현황 관리가능 • 최근 5년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 가능
	나. 통합관리계정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계정 설정 • 연구과제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및 사용 현황 관리가능
	다.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 (연구기관단위: 10억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7억원, 연구책임자 단위: 3억원) • 과기정통부 승인 시 증액 가능
2. 통합 연구시설 · 장비비 사용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 → 담당지원 부서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승인 및 집행)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내역 확인 가능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대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재원의 ZEUS 장비 관리 기능 및 계정 연계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정별 사용 내역 (유지·보수 대상 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확인 가능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여부 (담당지원 부서 담당자와 연구책임자 확인 가능)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상시 점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점검·관리 기능 예) 용도외 사용 방지, 타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서식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연 등(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항 해당 기관) <input type="checkbox"/> 전문생기연 등(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3항 해당 기관) <input type="checkbox"/>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대표자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p>우리 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제출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 2.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1부(필요시). 4.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1부(필요시)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p>				



[서식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자체점검표(제11조제1항 등 관련)

〈총괄표〉

(단위: 원, %)

연구시설·장비비 총액(A)	사용(집행)한 연구시설·장비비 (B)	사용(집행) 비율 (C=B/Ax100)
A	B	

〈세부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 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기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